

금속노조 10기 1년차 법률학교 2018. 2. 22. ~ 24. 개최 !

금속노조 10기 1년차 법률학교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8. 2. 22(목) ~ 24(토) , 장소 : 전북 장수 농업연수원

공통강좌 : 헌법(기본권)과 노동3권 , 임금과 임금체계 , 산재보상 , 단체교섭과 협약,
부당노동행위와 대응법 , 구조조정과 기업회계 알아가기, 법률분쟁시 대응법
선택강좌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쟁의행위 , 최저임금

※ 참가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문경근 (전화 : 02-2635-0419 , 02-2679-1790)

동광기연 고용승계 쟁취! 일터로 돌아갑니다!

2017년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인천지부 동광기연 조합원 43명이 2018년 설 명절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동광기연은 도어트림 등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GM에 납품하는 10여 개의 국내외 계열사를 거느린 동광그룹의 핵심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주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동광기연 공장 매각대금 수백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경영을 악화시킨 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폐업까지 하였습니다. 동광기연 조합원들은 고용 보장 합의에 따라 계열사에 고용 및 노동조합 승계를 요구하며 1년 간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결국 승리하여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동광기연 조합원들에게 굳건하고 따뜻한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법률원도 투쟁에 결합하여 가처분,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및 배임·횡령 고소·고발,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동광기연 조

합원들은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연대 투쟁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률원도 항상 연대하며 투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기자간담회



2018. 2. 5. 서울고등법원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가 2018. 2. 6. 열린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규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 2011다112391 사건

법률원은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공개변론에 참여했습니다. (담당 : 장석우 변호사)

쟁점 ① 근로기준법상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 (결국 1주일의 노동시간 한도가 68시간인지, 52시간인지)

②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으로 볼 경우 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③ 노동시간 단축과 중복할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노동자들의 추가수당 청구를 '신의칙'상 허용하여야 하는지

향후 진행 앞으로 2~3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 활동

- 2월 초 경주지부를 시작으로 각 사업장 담당 간부들이 기본적인 경영분석을 할 수 있도록
- 지역 순회 교육과 실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원하는 지역지부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꿈수 안통해

서울중앙 2018. 1. 25. 선고 2017고단48 판결

쟁점 '유성 범대위'가 양재동 본사 앞 '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현대차 집회를 방해한 것이 '집회방해죄'인지?

판결요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기능, 현대차 집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집회인 점, 현대차 직원의 집회신고를 통한 장소선점은 타인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점, 현대차 집회는 본사 앞에서 연중 개최할 필요가 없는 점, 현대차는 경비상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 협조로 직원과 알바를 동원했는데 이들은 자발적 의사로 의견표명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닌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 → **현대차 집회는 경비 업무의 일환.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유성 범대위)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볼 수는 없다. → 무죄**

의의 집회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집회 방해를 위한 자본의 '알박기 꿈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 대상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아니다

서울중앙 2018. 1. 25. 선고 2014가합57063 판결

쟁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통상임금)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판결요지 신의칙 위반 여부는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의 가능성, 경영 상황의 호전 가능성** 여부, 각종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신의칙을 이유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각종 법정수당에 있어서 **분할 지급 가능성이 존재** 하는지 여부, 표준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손실, 유동비율, 부채,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 여부', 피고들 소속 근로자의 수 및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추정 소급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신의칙 위반 아님. 노동자 전원 일부 승소** (휴일연장중복할증 등 일부만 기각)

의의 신의칙 판단에 원청 기아차와의 **도급비용 추가 협상 가능성, 분할지급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임금청구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됩니다.